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2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17.

발 의 의 원 : 양은숙 의원,
김보경 의원, 박주용 의원

1. 수정이유

- 일부개정조례안의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비용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조례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당초 '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'에서 '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'로 수정
-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 당초 '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'에서 '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'로 수정
-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
제11조(자체운영규정) 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-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[별표 1], [별표 2]를 다음과 같이 신설

[별표 1] 시설이용료(제6조제1항 관련)

구 분	운영기준	이용료(원)		비 고
	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일 반	
식 당	1회	무료	5,000원 이내	

[별표 2] 강당사용료(제6조제4항 관련)

구 분	기 준	이용료(원)	비 고
대강당	• 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 : 09:00~18:00)	3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야간 및 토·일요일, 공휴일은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• 2시간 초과 시, 시간당 10,000원 가산

붙임 수정안 1부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”를 “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”를 “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”로 한다.

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자체운영규정) 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 표 1] 시설이용료(제6조제1항 관련)

구 분	운영기준	이용료(원)		비 고
	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일 반	
식 당	1회	무료	5,000원 이내	

[별 표 2] 강당사용료(제6조제4항 관련)

구 분	기 준	이용료(원)	비 고
대강당	• 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: 09:00~18:00)	30,000원	• 야간 및 토요일, 공휴일은 주간사 용료의 20% 가산 • 2시간 초과 시, 시간당 10,000원 가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례(안)과 수정(안)의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이용료 및 사용료)</p> <p>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<u>자는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<u>자는 별표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~ 3. (생략)</p> <p>제11조(자체운영규정)</p> <p><u>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이용료 및 사용료)</p> <p>① _____ _____</p> <p>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_____.</p> <p>② ~ ③ 현행과 같음.</p> <p>④ _____ _____</p> <p>_____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_____.</p> <p>1.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자체운영규정 등)</p> <p>① <u>수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u> - _____.</p>	<p>제6조(이용료 및 사용료)</p> <p>① _____ <u>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_____.</u></p> <p>② ~ ③ 현행과 같음.</p> <p>④ _____</p> <p>_____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_____.</p> <p>1.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자체운영규정)</p> <p><u>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u> _____.</p>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시설이용료 (제6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20 1310 566 1400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운영기준</th> <th colspan="2">이용료(원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국민기초생활수급자</th> <th>일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식당</td> <td>1회</td> <td>무료</td> <td>1,8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 2] 강당사용료 (제6조제4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20 1608 577 1713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</th> <th>이용료(원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강당</td> <td>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: 09:00~18:00)</td> <td>30,000원</td> <td>• 야간 및 토요일, 공휴일 등 휴일 등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• 2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0,000원 가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운영기준	이용료(원)		비고	국민기초생활수급자	일반	식당	1회	무료	1,800		구분	기준	이용료(원)	비고	대강당	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: 09:00~18:00)	30,000원	• 야간 및 토요일, 공휴일 등 휴일 등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• 2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0,000원 가산	<p>② 수탁지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이용료 및 제6 조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 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에 따른 복지관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군수에게 그 금액의 변경을 건의 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[별표 1] 시설이용료 (제6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24 1299 1412 1384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운영기준</th> <th colspan="2">이용료(원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국민기초생활수급자</th> <th>일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식당</td> <td>1회</td> <td>무료</td> <td>3,000원 이내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 2] 강당사용료 (제6조제4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24 1590 1412 169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</th> <th>이용료(원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강당</td> <td>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: 09:00~18:00)</td> <td>30,000원</td> <td>• 야간 및 토요일, 공휴일 등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• 2시간 초과 시, 시간당 10,000원 가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운영기준	이용료(원)		비고	국민기초생활수급자	일반	식당	1회	무료	3,000원 이내		구분	기준	이용료(원)	비고	대강당	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: 09:00~18:00)	30,000원	• 야간 및 토요일, 공휴일 등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• 2시간 초과 시, 시간당 10,000원 가산
구분			운영기준	이용료(원)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국민기초생활수급자	일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식당	1회	무료	1,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준	이용료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강당	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: 09:00~18:00)	30,000원	• 야간 및 토요일, 공휴일 등 휴일 등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• 2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0,000원 가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운영기준	이용료(원)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국민기초생활수급자	일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식당	1회	무료	3,000원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준	이용료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강당	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: 09:00~18:00)	30,000원	• 야간 및 토요일, 공휴일 등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• 2시간 초과 시, 시간당 10,000원 가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(운영위원회)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시설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4.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
5.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
6.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신설 2012. 1. 26.>

1. 시설의 장
2. 시설 거주자 대표
3.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
4. 시설 종사자의 대표

5. 해당 시·군·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6.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
 7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8.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1. 시설의 회계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2.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·사고에 관한 사항
-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